

(앞쪽)
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	폐수배출시설 설치 ☐ 허가증 ☐ 신고증명서	
제	호		
① 사업장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			
④ 사업장소재지		(전화번호:)	
⑤ 사업종류		(분류번호)	⑥ 종류
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		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	
⑨ 폐수배출요인명세			
원료명	사용량	생산제품명	생산량
허가 또는 신고 사항	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: 따로 붙임		
	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		
	폐수배출시설명	폐수배출량	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
⑫ 폐수처리계통도: 따로 붙임			
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			
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(사업장 부지면적 m ²)		☐ 해당 ☐ 해당없음 ※ 해당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 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.	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			
직인			

< 변경사항 >

[illegible]

< 처분사항 >

[illegible]

< 참고사항 >

[illegible]